

행정사무조사 자료

농림축산국
농정과

진양에너지 농지전용 협의 내용

□ 농지전용협의 처리 경과

- 사업자: (주)진양에너지(대표 김학○)
- 위치: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51번지
- 지역·지구: 생산관리지역(농업진흥지역 밖)
- 전용목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증설 부지 조성
- 전용면적: 999 m²
- 협의 경과: 개발행위허가와 연계한 농지전용협의 완료[농정과-21341호(2025. 6. 20.)]

□ 사진현황



위성사진



현장사진

□ 농지전용협의 관련 검토 내용

- 본 건 농지전용협의는 개발행위허가와 연계된 농지전용허가 의제 사안으로, 협의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 기준에 따라 처리된 사항임.
- 신청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생산관리지역으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며, 전용면적 999㎡는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령상 허용 기준 이내임.
- 이에 따라 본 건 농지전용협의는 절차적·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처리된 사안임.

□ 농지전용협의 취소 가능성 검토

- 해당 농지전용협의는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으로, 주된 인허가 권한이 개발행위허가 소관 부서에 있어 농정과 단독 직권취소 대상이 아님.
- 다만, 「농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 취소 요청이 가능한 경우는 농지보전부담금 미납, 사업 미착수 등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사유에 한정되며, 본 건은 농지보전부담금이 정상 납부(2025. 6. 25.) 되었으며 현재 사업이 착수·진행 중으로 취소 요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종합 의견

- 본 건 농지전용협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 취소 또는 재검토할 사유는 없음.
- 다만,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안전관리 및 피해방지계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관련법령

농지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083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제41조의3에 따른 농지개발행위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3. 3. 23., 2015. 1. 20., 2017. 10. 31., 2024. 1.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 의제되는 협의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농지전용의 원인이 된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 20.>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 [대통령령 제35769호, 2025. 9. 23., 타법개정]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③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6. 5., 2009. 11. 26., 2009. 12. 15., 2012. 4. 10., 2013. 12. 30., 2014. 3. 24., 2014. 7. 14., 2016. 1. 22., 2016. 11. 29., 2018. 4. 30., 2021. 1. 5., 2024. 7. 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자목부터 카목까지,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거목까지, 러목·머목, 제19호, 제20호가목, 사목부터 자목까지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사. 도료류 판매소
-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 자. 화약류 저장소
-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